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9년 2월 1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 제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소식지 제호 변경 시 공모를 거치는 방법으로 변경(안 제2조)
- 소식지 종류별 발행 주기 명시(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영등포구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 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명칭 변경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화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 발행일을 현행 반상회날에서 소식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소식지 게재내용을 구정·의정소식에서 시정·국정소식까지 게재토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의 명칭변경 등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 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주민참여 확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영등포구 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0 호
----------	--------

제출연월일: 2019. 2.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영등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해 제호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종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나. 소식지 제호 변경 시 공모를 거치는 방법으로 변경(안 제2조)
- 다. 소식지 종류별 발행 주기 명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2) 규제개혁심사 결과: 신설 · 강화 되는 규제사무 없음
-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9. 1. 17. ~ 2019.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호)”를 “(종류 및 명칭)”으로 한다.

같은 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한다.”를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간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같은 조의 제1항에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등포구 종합 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
2. 영등포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3. 영등포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발행일 등)”을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소식지는 월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르신소식지와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의 “구정·의정소식”을 “구정·의정소식, 시정·국정소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

같은 조의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의 제4항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영등포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같은 조의 제5호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식지 명칭 선정"으로 한다.

같은 조의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영등포구"로 한다.

같은 조의 제4항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영등포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호)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종류 및 명칭)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간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영등포구 종합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u> <u>2. 영등포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u> <u>3. 영등포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u> <u>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u>
제4조(발행일 등) <u>소식지는 월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u>	제4조(발행) <u>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르신소식지와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 -----.
제6조(게재내용) <u>소식지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u>	제6조(게재내용) ----- <u>구정 · 의정소식, 시정·국정소식</u> ----- ----- -----.
제7조(<u>편집위원회</u> 구성 등) ①	제7조(<u>위원회</u> 구성 등)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략)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편집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 ~ ② (생략)

③ 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 때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

----- 위원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1. ~ 4. (현행과 같음)

5. 소식지 명칭 선정

6.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 때까지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광고료의 수입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⑤ (생 략)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광고료의 수입은 <u>영등포구</u>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